국회에서 의결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㊞

2017년 12월 12일

국무총리 이 낙 연

국무위원 법무부장관 박 상 기

◉법률 제15159호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

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2조제3항 단서 중 “제76조”를 “제76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70조제2항 단서 중 “제76조”를 “제76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7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효과적인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제공되는 장소 또는 그 장소에 머무르는 외국인의 관리에 관하여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97조제6호 중 “제76조”를 “제76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효과적인 외국인의 송환을 위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외국인의 송환 의무가 있는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송환하기에 앞서 임시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, 이 경우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제공되는 장소 또는 그 장소에 머무르는 외국인의 관리에 관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